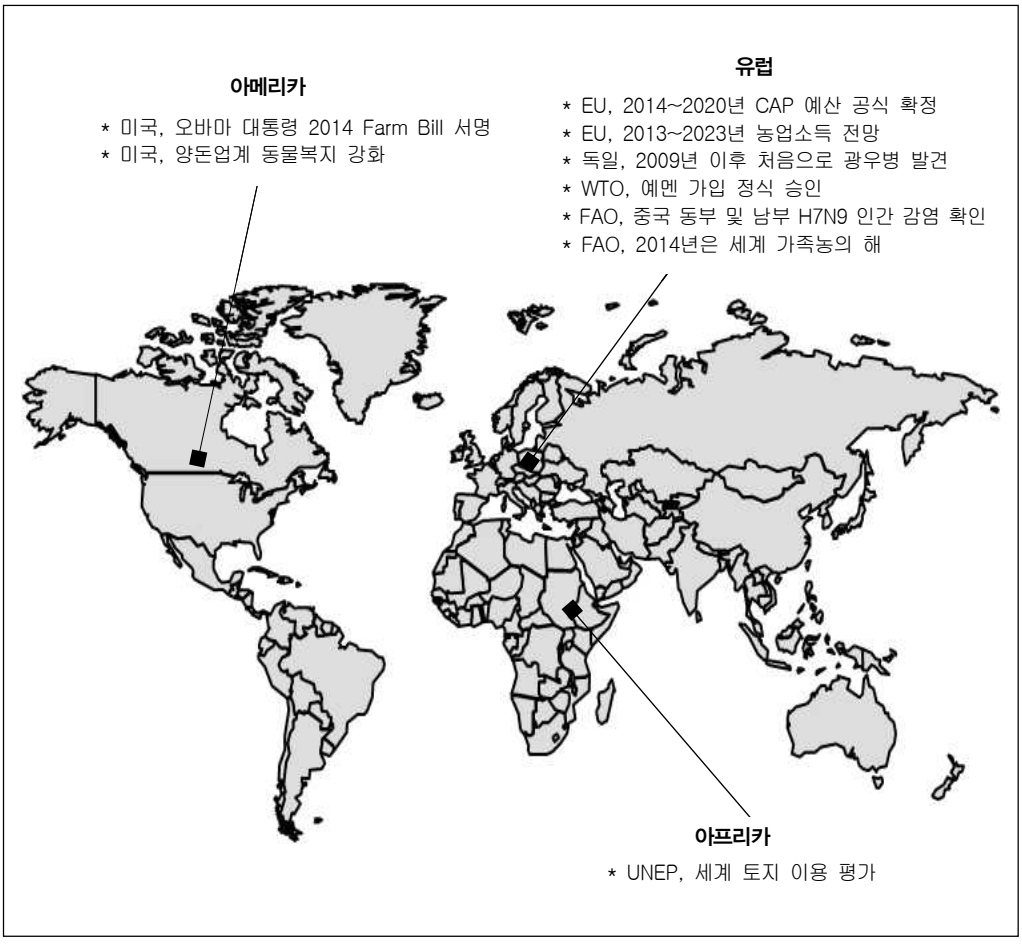
5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농정 동향

1. 미국, 오바마 대통령 2014 Farm Bill 서명
2. 미국, 양돈업계 동물복지 강화
3. EU, 2014~2020년 CAP 예산 공식 확정
4. EU, 2013~2023년 농업소득 전망
5. WTO, 예멘 가입 정식 승인
6. FAO, 중국 동부 및 남부 H7N9 인간 감염 확인
7. FAO, 2014년은 세계 가족농의 해
8. 독일,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광우병 발견
9. UNEP, 세계 토지 이용 평가

해외 농업·농정 동향 (2014. 2)



미국, 오바마 대통령 2014 Farm Bill 서명

미 의회, 2014 Farm Bill 최종 가결

❍ 미국 의회는 5년 주기로 국가의 농업, 영양섭취, 보전, 산림과 관련된 정책을 담은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함. 가장 최근의 농업법은 2008년에 가결되어 2012년 9월 말 시효가 만료된 바 있음. 여러 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시적인 연장이 이루어지다가 올해 2월 4일 4년 가까이 합의를 보지 못했던 2014년 농업법이 상원을 통과했음. 2월 8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9,564억 달러에 달하는 2014년 농업법안[1]에 최종 서명함.

-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4 미국 농업법이 농업인뿐만 아니라 푸드 스탬프(food stamp, 식품보조지원제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바이오연료 연구, 새로운 농산품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산업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평가함.
-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 따르면 현 농업법은 향후 10년간 기존 정책에 비해 166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다른 측정 기준을 적용하여 의원들은 23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본 농업법은 수십 년 이래 미국 농업정책에 있어 상당한 개혁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됨.

❍ 지난 주 하원에서 통과한 2014년 농업법을 미 상원이 2월 4일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가결 처리함. 본 법안은 양원합의(bipartisan agreement)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 주요 부문의 경제를 부양시킬 것으로 전망됨.

- 본 농업법은 농업인에게 매해 지불하던 직접지불금과 기타 보조금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기상재해와 같은 농업 위험관리를 보완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강화함. 또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중복 수혜를 방지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4 Farm Bill 세부 내용

❍ 2014년 농업법은 농업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재정 적자폭을 줄이며, 농업인과 경

1) 공식적으로 Agricultural Act of 2014으로 불림. 2014 농업법의 적용 기간은 2014~2018년(5년)이며, 예산은 2014~2023년(10년) 간 9,564억 달러임.

영자들이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함.

1. 직접지불금을 폐지하고 위험관리도구를 강화함.
2. 현 상황에 부적합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중복 프로그램을 통합함.[2)]
3. 농업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미국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1,600만 농업인에게 확실성을 제공함.
4. 미래 세대를 위해 토지, 용수, 야생자원을 보전함.
5. 부정수급과 남용을 억제하면서 식품지원제도를 유지함.
6. 적자규모를 230억 달러 감축함.

❍ **직접지불금 폐지, 위험관리 강화**: 2014년 농업법은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지불금과 기타 농가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농가 프로그램을 개혁하여 재원을 절감하고자 함. 대신 천재지변과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위험관리수단을 강화할 예정임. 양원이 합의한 본 결정으로 233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 본 법안은 비용효과적인 위험관리 도구인 작물보험을 강화하여 날씨 및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함.
- 추가적으로 영구작물 및 축산재해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뭄, 겨울태풍, 봄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의 손실을 보호함.

❍ **프로그램 간소화, 환경 보전 강화**: 본 법은 23개의 기존 보전 프로그램을 13개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한편 토지, 용수, 야생자원 보호를 강화할 것임. 본 개혁은 적자를 60억 달러 감축할 것으로 기대됨.

❍ **영양섭취지원프로그램(SNP) 유지, 남용 억제**: 2014 농업법은 영양섭취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에서 중요한 지원은 유지하되 재원을 절감하기 위해 부정수급 및 남용 목적의 지원을 중단할 것임. 본 농업법은 소수의 수혜자를 위해 혜택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구멍을 메울 것임. 추가적으로 복권 당첨자가 수혜를 받는 것을 중지할 것이며, 밀매, 사기, 남용을 엄중 단속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 또한 새로운 실험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직업 훈련과 기타 서비스를 통해 고용을 안정화할 것임. CBO는 이러한 노력으로 SNAP로부터 향후 10년간 80억 달러의 재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함.

❍ 본 법은 농업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항목을 강화하는 반면 적자

2) 약 100여개에 달하는 프로그램 또는 허가를 폐지할 계획임.

감축을 통해 미국 농업 경제 발전을 도모함.

- 새로운 농산품 시장 확보를 통해 수출기회 확대
- 신선과일 및 채소, 지역산품, 유기농산품을 선호하는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산품 지역 내 판매 장려,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지원, 농업인과 학교 및 기타 지역사회 기반 기관 연결 등에 대한 투자 지속
- 훈련 및 자본접근 허용을 통해 신규 농업인 및 목장 경영자 지원
- 고용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state)가 운영하는 실험 프로젝트 투자
- 미국에서 생산된 농산품 원재료를 사용한 생산과정, 즉 미국 내 바이오기반 생산부문 확대. 또한 셀룰로오스 에탄올 및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같은 바이오에너지 생산량 증가
- 생산성 및 새로운 농업 혁신을 위해 농업 부문 연구 투자
- 농촌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향상과 친소규모사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촌 발전
- 푸드뱅크(food banks)[3] 지원 증대
- 규제 장벽 완화

❍ 미국의 2014년 농업법은 농업인 소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농업 부문 고용을 창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여기에는 작물보험과 같은 위험관리 프로그램 강화, 바이오에너지 생산, 연구 강화, 과일 및 채소 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함. 이러한 투자는 총 142억 달러에 달함. 위에 언급한 지출 감축 및 투자를 통해 2014년 농업법은 재정적자를 총 230억 달러 감축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Reuters(2014.2.8),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griculture, Nutrition and Forestry(2014.2.4)

3)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음식을 얻는 곳.

미국, 양돈업계 동물복지 강화

❑ 스미스필드와 타이슨 푸드, 모돈 스톨 사용 단계적 폐지 추진

❍ 최근 미국의 가장 큰 두 식품가공기업인 스미스필드(Smithfield)와 타이슨 푸드(Tyson Foods)가 돼지 생산 방법에 있어 계약생산자에게 주요한 변화를 요구하여 양돈업계에서 동물복지가 이슈화됨.

❍ 세계 1위 돼지고기 생산업체인 스미스는 자사 계약생산자에게 임신돈을 사육하는데 있어 모돈 스톨(sow stall)[4]에서 군사(group housing)[5]로 전환하라고 요구하였으며, 2022년까지 스톨의 사용 금지를 완료하기로 결정함.

- 스미스필드의 이번 결정은 스미스필드의 계약생산자까지 모돈 스톨을 금지한 확장된 동물복지 정책으로, 자회사 농장의 경우 2017년까지 모돈 스톨을 폐지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음.
- 스미스필드와 이의 돼지생산 자회사인 머피브라운 LLC(Murphy-Brown LLC)는 계약생산자들에게 8년 안에 군사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며 본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차등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군사로 전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나 이러한 전환을 거부하는 생산자의 경우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낮다고 경고함.

❍ 스미스필드의 발표 이후 타이슨 푸드 또한 돼지 생산자에게 돼지의 사육 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함.

- 돼지 생산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타이슨 푸드는 모든 돼지 생산 농장에서 비디오 관찰과 단미(tail docking)와 거세에 있어 고통완화제 사용, 임신돈의 적절한 사육 공간 제공 등을 요구함.

❍ 최근 이러한 미국업계의 동물복지 향상 움직임은 법제화를 통해 2013년 1월 스톨

4) 스톨은 보통 폭 60cm, 길이 210cm의 크기의 철창 칸막이 형식의 돼지 사육 시설로 임신돈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여 동물복지에 있어 논란을 일으켜 왔음.
5) 군사(group housing)란 모돈을 하나의 작은 우리에 가두지 않고 큰 우리에 여러 마리의 모돈을 함께 사육하여 움직임의 자유와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형태의 사육시설임.

사용을 금지한 EU와 달리 소비자와 동물복지단체의 상업적 압박을 통해 나타남.

❑ 양돈생산업계 및 소비자단체 반응

❍ 스미스필드 푸드 최고경영자 C. Larry Pope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돼지생산자의 생산비용이 영향을 받음을 잘 알고 있지만 적절히 계획된 전환은 향후 농장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사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타이슨 푸드는 금번의 새로운 발표가 오늘날 돼지생산 현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고 언급함.

❍ 이전에 타이슨 푸드와 스미스필드를 동물복지에 대해 뒤쳐져 있다고 고발한 미국휴먼소사이어티(Human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HSUS)는 두 기업의 발표를 환영함.

- HSUS는 2012년 타이슨 푸드에게 모돈 스톨 사용 돼지고기 판매 중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음. 한편 타이슨 푸드는 2013년 오클라호마 돼지생산업체의 동물학대 비디오로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 이를 고발한 머시포애니멀(Mercy for Animals)은 이번 발표로 인해 타이슨 푸드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며 향후 대형소매업체인 월마트(WalMart)에게 모돈 스톨 사용 금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전미양돈이사회(National Pork Board)는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인지하고 있지만 금번 타이슨 푸드의 발표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함.

- 이는 현재 돼지 사육에 있어 고통 완화제용으로 허가된 약물이 없어 타이슨 푸드의 요구조건 충족 시 수의사와 함께 방법을 찾을 것을 권고함. 또한 비디오 관찰 요건이 돼지 생산 비용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 반면 산란계 사육시설과 관련된 또 다른 동물복지 이슈는 미국 주(state)간 분열을 가져옴. EU의 유사한 논쟁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다 엄격한 복지규칙은 미국 내 주 간 무역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자료: The Wall Street Journal(2014.1.8, 2014.1.15)

EU, 2014~2020년 CAP 예산 공식 확정

EU 회원국 정상, 공동농업정책(CAP) 예산안 공식 확정

❍ 2014년 2월 EU 회원국 정부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비준된 2014~2020년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재원할당을 공식적으로 확정함. CAP 예산은 다년간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하에서 관리됨.

❍ 2014~2020년 CAP 총 예산은 2011년 가격으로 3,627.9억 유로임.

- 총 예산(3,627.9억 유로) 중 2,778.5억 유로가 1축 직접지불금 및 시장관리조치 예산으로 배정됨. 이는 시장개입을 위한 새로운 '위기비축(crisis reserve)' 예산을 포함함.
- 국가농촌개발 프로그램을 공동재원하기 위한 2축 농촌개발 예산은 총 849.4억 유로임. 이는 16개 회원국의 '추가적인' 할당을 포함함. '성과비축(performance reserve)'은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조건적으로 각 회원국의 2축 예산 상한을 6% 까지 증가시킬 것임.

❍ 매년 2%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2014~2020년 CAP 총 예산은 4,083.1억 유로로 1축 예산과 2축 예산은 각각 3,127.4억 유로, 955.8억 유로임. 1축 예산 중 2,941.8억 유로는 직접지불금 예산으로 배정됨<표 1 참조>.

❍ 2014년 직접지불금 재원(2013년에 신청한 보조금)은 위기비축 예산에 424백만 유로를 지원하기 위해 2.45% 감소함.

❍ 합의된 2014~2020년 CAP 예산은 EU집행위원회가 초기에 제안한 금액보다 4.2% 낮은 수준이며, 2007~2013년 할당예산보다 13% 낮은 수준임. 2014 회계연도 직접지불금 예산(2013년 신청 보조금)은 별개로 확정되었으며, 2015년(신청연도 2014년)과 2016~2020년은 지난 12월 하반기에 발표한 새로운 규정(regulations)하에서 확정됨.

❍ 각 EU 회원국의 2014~2020년 1축 직접지불금 및 2축 농촌개발 예산 할당은 <표 2> 및 <표 3>과 같음.

표 1 2014~2020년 각 축 예산 할당액 (현재가격)

단위: 백만 유로

	1축(직접지불금 및 시장조치) 예산	2축(농촌개발) 예산	총CAP 예산
2014년	44,130	13,652	57,783
2015년	44,368	13,653	58,021
2016년	44,628	13,653	58,281
2017년	44,863	13,654	58,517
2018년	44,889	13,654	58,544
2019년	44,916	13,655	58,571
2020년	44,941	13,656	58,597
2014~2020년 총예산	312,736	95,577	408,313

자료: CAP dash board, Agra Europe.

EU 일부회원국, 축간 예산 전용 계획 발표

❍ 2014~2020년 CAP 개혁 협정 하에서 EU회원국들은 1축 직접지불금 예산의 최대 15%까지 2축 농촌개발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하며 역으로도 마찬가지임.

- 한편 EU 평균직불금의 90% 이하를 수령하는 12개 회원국[6]의 경우 최대 25%까지 전용 가능함.

❍ EU회원국은 올해 8월까지 EU집행위원회에 축간 재원 이전 계획에 대해 알려야 함. 2017년 8월에는 총 재원 이전에 대한 검토가 있어 기존의 축간 재원 전용 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 EU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한편 각 회원국은 올해 2014년 축간 재원 이전 사용에 대해 집행위에 2013년 12월에 통지한 바 있음.

❍ 영국, 프랑스, 독일, 라트비아는 1축 예산을 2축 예산으로 전용할 계획임.

- 라트비아의 재원 이전 비율은 2014~2020년 동안 7.46%임. 라트비아는 2014년 1축 예산의 1,260만 유로를 2축 예산으로 전환할 계획임.
- 영국의 전체적인 전용 수준은 10.76%로 잉글랜드 12%, 웨일즈 15%, 스코틀랜드 9.5% 등임. 한편 북아일랜드는 2014~2020년 동안 축간 재원 이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 프랑스는 2014년 1축 예산의 3%를 2축 예산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함. 2015년 이후로는 3.3%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2014년의 경우 1축 예산의 22,760

6)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폴란드 등임.

만 유로가 2축 예산으로 전환될 예정임.

- 독일은 2014년에는 축간 재원 이전을 하지 않고 2015년부터 1축에서 2축으로 4.5%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폴란드,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는 농업인을 위한 직불금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 2축 예산을 1축 예산으로 전용할 계획임.

- 폴란드는 2축 예산의 최대 25%를 1축 예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집행위에 통지함. 폴란드는 2014년 2축 예산 중 39,190만 유로를 1축으로 전용할 예정임.
- 슬로바키아는 올해 5,770만 유로부터 시작하여 2축 예산의 21.3%를 1축 예산으로 전용할 계획임.
- EU의 가장 신회원국인 크로아티아는 2축 예산의 15%를 1축 예산으로 전용할 계획으로 올해 4,980만 유로를 1축 예산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것임.

그림 1 2014년 EU회원국별 축간 이전 계획



주: 1축→2축 예산 전용인 경우 양(+), 2축→1축 예산 전용인 경우 음(−) 표시.
자료: Agra Europe(2014.1.28.).

표 2 2014~2020년 EU 회원국별 1축 직접지불금 예산 상한(회계연도, 현재가격)

기준: 백만 유로

회원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4-2020
벨기에	552.3	544.0	536.1	528.1	520.2	512.7	505.3	3,698.7
불가리아	581.3	642.1	721.3	792.4	793.2	794.8	796.3	5,121.4
체코	880.6	875.3	874.5	873.7	872.8	872.8	872.8	6,122.5
덴마크	935.6	926.1	916.6	907.1	897.6	889.0	880.4	6,352.4
독일	5,178.1	5,178.2	5,144.3	5,110.4	5,076.5	5,047.5	5,018.4	35,753.4
에스토니아	99.0	110.0	121.9	133.7	145.5	157.4	169.4	936.9
아일랜드	1,222.4	1,216.5	1,215.0	1,213.5	1,211.9	1,211.5	1,211.1	8,501.9
그리스	2,313.0	2,047.2	2,039.1	2,015.1	1,991.1	1,969.1	1,947.2	14,321.8
스페인	5,097.4	4,833.6	4,842.7	4,851.7	4,866.7	4,880.0	4,893.4	34,265.5
프랑스	7,769.6	7,586.3	7,553.7	7,521.1	7,488.4	7,462.8	7,437.2	52,819.1
크로아티아	94.4	113.9	130.6	149.2	186.5	223.8	261.1	1,159.5
이탈리아	4,023.3	3,953.4	3,902.0	3,850.8	3,799.5	3,751.9	3,704.3	26,985.4
키프로스	52.7	51.3	50.8	50.2	49.7	49.2	48.6	352.5
라트비아	143.7	168.9	195.6	222.4	249.0	275.9	302.8	1,558.3
리투아니아	372.4	393.2	417.9	442.5	467.1	492.0	517.0	3,102.2
룩셈부르크	33.8	33.7	33.6	33.5	33.5	33.5	33.4	235.0

표 2 2014~2020년 EU 회원국별 1축 직접지불금 예산 상한(회계연도, 현재가격) (계속)

기준: 백만 유로

회원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4-2020
헝가리	1,280.2	1,272.8	1,271.6	1,270.4	1,269.2	1,269.2	1,269.2	8,902.5
몰타	5.4	5.2	5.1	5.0	4.9	4.8	4.7	35.2
네덜란드	806.8	793.3	780.8	768.3	755.9	744.1	732.4	5,381.6
오스트리아	697.5	693.7	693.1	692.4	691.8	691.7	691.7	4,851.9
폴란드	2,995.7	2,970.0	2,987.3	3,004.5	3,021.6	3,041.6	3,061.5	21,082.2
포르투갈	630.6	557.7	565.8	574.0	582.1	590.7	599.4	4,100.2
루마니아	1,263.4	1,428.5	1,629.9	1,813.8	1,842.4	1,872.8	1,903.2	11,754.1
슬로베니아	141.7	139.0	138.0	137.0	136.0	135.1	134.3	961.1
슬로바키아	372.5	377.4	380.7	383.9	387.2	390.8	394.4	2,686.9
핀란드	524.4	523.2	523.3	523.4	523.5	524.1	524.6	3,666.6
스웨덴	689.2	696.5	696.9	697.3	697.7	698.7	699.8	4,876.0
영국	3,249.9	3,548.6	3,555.9	3,563.3	3,570.5	3,581.1	3,591.7	24,660.9
EU 28개국 전체	42,006.8	41,679.9	41,923.9	42,128.9	42,131.8	42,168.6	42,205.4	294,245.3

자료: Agra Europe(2014.1.14.).

표 3 2014~2020년 EU 회원국별 2축 농촌개발 예산 상한(현재가격)

기준: 백만 유로

회원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4-2020
벨기에	78.3	78.5	78.7	78.8	79.0	79.2	79.3	551.7
불가리아	335.5	335.1	334.6	334.1	333.7	333.2	332.6	2,338.8
체코	314.3	313.0	311.6	310.1	308.7	307.1	305.5	2,170.3
덴마크	90.3	90.2	90.0	89.9	89.8	89.7	89.5	629.4
독일	1,178.8	1,177.3	1,175.7	1,174.1	1,172.5	1,170.8	1,168.8	8,217.9
에스토니아	103.6	103.7	103.7	103.7	103.7	103.8	103.8	725.9
아일랜드	313.1	313.1	313.0	312.9	312.8	312.7	312.5	2,190.0
그리스	601.1	600.5	600.0	599.5	598.9	598.3	597.7	4,196.0
스페인	1,187.5	1,186.4	1,185.3	1,184.2	1,183.1	1,182.1	1,182.1	8,290.8
프랑스	1,404.9	1,408.3	1,411.8	1,415.3	1,418.9	1,422.8	1,427.7	9,909.7
크로아티아	332.2	332.2	332.2	332.2	332.2	332.2	332.2	2,325.2
이탈리아	1,480.2	1,483.4	1,486.6	1,489.9	1,493.2	1,496.6	1,499.8	10,429.7
키프로스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32.2
라트비아	138.3	138.4	138.4	138.4	138.5	138.5	138.5	969.0
리투아니아	230.4	230.4	230.4	230.5	230.5	230.5	230.4	1,613.1
룩셈부르크	14.2	14.3	14.3	14.4	14.4	14.5	14.5	100.6
헝가리	495.7	495.0	494.4	493.7	493.0	492.2	491.4	3,455.3

표 3 2014~2020년 EU 회원국별 2축 농촌개발 예산 상한(현재가격) (계속)

기준: 백만 유로

회원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4-2020
몰타	13.9	14.0	14.1	14.1	14.2	14.3	14.4	99.0
네덜란드	87.1	87.0	86.9	86.8	86.6	86.5	86.4	607.3
오스트리아	557.8	559.3	560.9	562.5	564.1	565.7	567.3	3,937.6
폴란드	1,569.5	1,567.5	1,565.3	1,563.2	1,561.0	1,558.7	1,556.0	10,941.2
포르투갈	577.0	577.9	578.8	579.7	580.6	581.5	582.3	4,057.8
루마니아	1,149.8	1,148.3	1,146.8	1,145.2	1,143.6	1,141.9	1,139.9	8,015.7
슬로베니아	118.7	119.0	119.3	119.7	120.0	120.4	120.7	837.9
슬로바키아	271.2	270.8	270.4	270.1	269.7	269.3	268.8	1,890.2
핀란드	335.4	336.9	338.5	340.0	341.6	343.2	344.8	2,380.4
스웨덴	248.9	249.0	249.2	249.3	249.5	249.7	249.8	1,745.3
영국	371.5	370.5	369.5	368.6	367.5	366.6	365.9	2,580.2
EU 28개국 전체	13,618.1	13,618.7	13,619.2	13,619.7	13,620.2	13,620.8	13,621.4	95,338.1
기술지원(0.25%)	34.1	34.1	34.1	34.1	34.1	34.1	34.1	238.9
합계	13,652.3	13,652.8	13,653.3	13,653.8	13,654.4	13,654.9	13,655.5	95,577.1

자료: Agra Europe(2014.1.14.).

※ 자료: Agra Europe(2014.1.14, 2014.1.28).

EU, 2013~2023년 농업소득 전망

※ 주요 농작물과 축산물의 생산액은 추정기간(2005-2023년) 동안의 생산량과 생산자 가격의 변화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함. 과일류, 채소류, 와인, 올리브유 등 분석에서 다루지 않은 품목의 생산액은 GDP 성장률과 분석에서 다루는 품목의 예상 생산액 변화율을 따르는 것으로 상정함.

2012년 대비 2013년 농업소득

❍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2012년 대비 2013년 명목소득은 0.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물가상승률(inflation rate)과 0.9%의 농업 종사자의 감소 비율을 고려하면, EU28개국의 농업인 한 명당 실질소득은 2012년 대비 2013년에 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감소는 생산액이 1.2% 감소하였고,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7]지출은 1.7% 감소하였기 때문임.

❍ 축산물의 생산액은 2013년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반면 농작물의 생산액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농작물의 생산액 하락은 상당수 농작물의 생산자 가격의 큰 하락으로 인한 손실액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익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임.

EU 28개국 농업소득 전망

❍ EU 28개국의 평균소득 발전 양상으로는 EU 15개국[8]과 EU 13개국[9] 간의 상당한 총소득 차이를 가늠하기 쉽지 않음.

- EU 15개국에서 농업인 한 명당 실질 농업소득은 2023년까지 17.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EU 13개국의 농업인 한 명당 실질 농업소득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결과적으로 EU 15개국과 EU N13개국에서의 농업인 한

7) 최종 소비 이전단계에서의 소비.
8) 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등 15개 회원국을 의미함.
9) 2004년에 가입했거나 그 이후에 가입한 국가들로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 13개 회원국을 의미함.

명당 농업소득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지만 여전히 그 금액은 상당할 것임.

❍ EU 15개국과 EU 13개국의 소득 발전 수준의 차이는 새로운 회원국에서 시행 중인 한층 더 강력한 구조조정과, 추정기간 동안 EU 13개국에서 예상되는 농업 종사자의 더욱 큰 감소율에 주로 기인함.

표 1 2010~2023년 EU 농업소득 전망(2003~2007 평균 =10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명목적 요소소득														
EU 28	**101.0**	**108.6**	**109.9**	**109.0**	**110.6**	**115.1**	**115.1**	**114.3**	**116.1**	**117.8**	**116.0**	**115.2**	**115.5**	**114.7**
EU 15	97.7	101.0	105.4	104.1	105.8	109.7	109.7	108.7	110.1	111.6	109.9	109.0	109.3	108.5
EU N13	121.5	155.4	137.3	139.4	140.6	148.5	148.2	148.9	152.9	155.6	154.1	153.8	153.9	153.2
실질적 요소소득														
EU 28	**93.5**	**98.8**	**98.6**	**96.7**	**96.7**	**98.9**	**97.1**	**94.6**	**94.3**	**93.9**	**90.8**	**88.5**	**87.1**	**84.9**
EU 15	92.2	95.0	96.1	94.7	94.9	96.9	95.2	92.6	92.1	91.7	88.6	86.3	85.0	82.8
EU N13	101.5	122.0	113.8	108.8	107.5	111.4	108.7	106.9	107.4	107.1	103.9	101.6	99.6	97.1
노동 투입														
EU 28	**84.3**	**81.7**	**79.7**	**79.0**	**76.5**	**74.1**	**71.8**	**69.5**	**67.4**	**65.3**	**63.3**	**61.4**	**59.5**	**57.7**
EU 15	90.1	88.2	87.2	85.7	84.0	82.4	80.8	79.3	77.7	76.2	74.7	73.3	71.9	70.5
EU N13	79.2	76.1	73.2	73.1	69.9	66.9	63.9	61.1	58.5	55.9	53.5	51.1	48.9	46.7
농업인 한명 당 실질농업소득														
EU 28	**110.8**	**120.7**	**123.6**	**122.3**	**126.3**	**133.4**	**135.1**	**135.8**	**139.8**	**143.5**	**143.2**	**143.9**	**146.0**	**146.8**
EU 15	102.3	107.7	110.2	110.5	112.9	117.5	117.7	116.7	118.5	120.3	118.5	117.7	118.2	117.5
EU N13	127.7	159.7	154.9	148.3	153.3	166.1	169.5	174.3	183.2	190.9	193.7	198.0	203.1	2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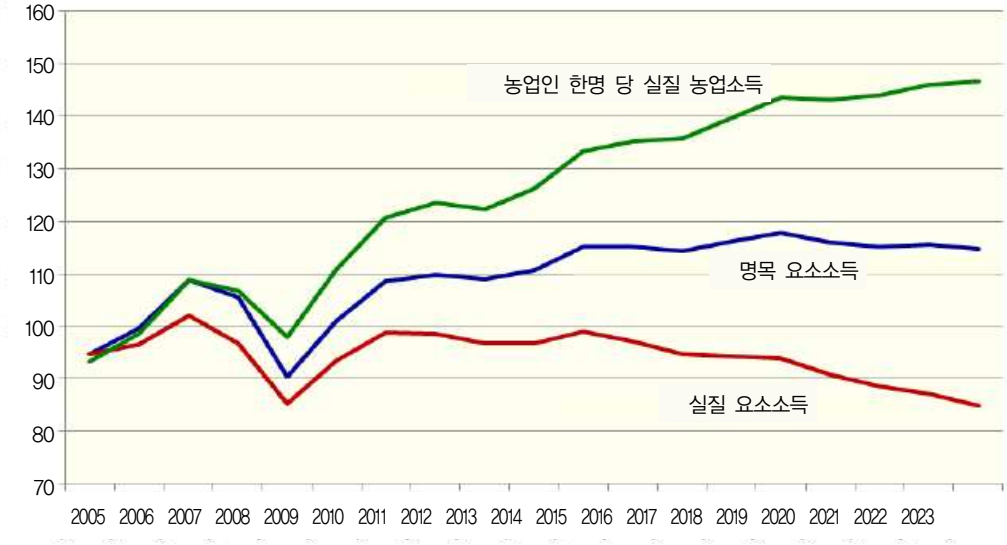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in the EU 2013-2023*. European Commission.

❍ EU28개국에서 농업인 한 명당 실질 농업소득은 꾸준한 추세(패턴)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봄.

❍ 2014년에 특별히 농작물의 경우 생산자 가격은 11.2%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사료, 연료, 비료 등 중간재의 지출액 감소는 생산액 감소를 상회하여 명목소득은 증가할 것임.

❍ 2015년에 중간재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1 2010~2023년 EU 농업소득 발전 양상(2003~2007 평균=100)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in the EU 2013-2023*. European Commission.

되기 때문에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은 모두 증가할 것임. 2018년과 2019년에는 특별히 돼지고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득은 재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과 2023년 사이에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간재 가격 상승과 증가하는 고정자본 소모량이 생산액 증가분을 초과한다고 가정할 시, 총명목요소소득은 감소할 것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12.23)

WTO, 예멘 가입 정식 승인

WTO, 발리 각료회의에서 예멘 가입 정식 승인

❍ WTO는 2013년 12월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각료회의에서 예멘의 가입을 정식 승인함. 향후, 예멘 국내에서의 비준 절차를 거쳐 가입이 완료될 것임. WTO 가입으로 국제표준에 따른 무역·투자 환경의 정비가 국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외국기업에 있어서 우선 정치·치안 정세의 안정이 중요 사안임.

10년 경과하여 가입 교섭 결실

❍ WTO는 2013년 12월 3일부터 7일,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제9회 각료회의를 개최함. 12월 4일 회의에서 예멘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음.

- 이후, 예멘은 2014년 6월 2일까지 WTO협정서 비준을 하고, 그 후 30일 이내에 정식가입국이 될 예정임. 예멘의 가입으로 WTO가입국은 160개국임.

❍ 예멘은 2000년 4월 WTO에 가입을 신청하였고, 10년 남짓 경과하면서 국내 무역제도를 WTO 규칙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해왔음. 예멘의 가입을 협의하는 작업부회는 2013년 9월에 각료회의에서의 협의하는 것에 합의하고, 금번 정식승인을 받은 것임.

❍ 예멘 정부는 WTO 가입 즈음, 원산지규칙, 선적 전 검사, 반덤핑, 대항조치 및 세이프가드 조치, 수출제한, 보조금,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자유지대(Free Zone), 2개국 간 혹은 지역 간 특혜 무역 등의 분야에서 WTO 규정에 완전히 적응할 것을 약속함.

- 시장 접근 가운데, 재산의 수입에 대해서는 최고적용 세율을 평균 21.1%(농산품은 평균 24.9%, 기타 산품은 평균 20.5%)로 제한함.
-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통신업, 건설·엔지니어링, 도매업, 금융업, 운수업 등을 포함한 11개 분야를 개방한다고 함.

❍ 예멘 측 교섭 책임자인 산업무역장관은 WTO의 가입 승인과 함께 WTO 가입국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예멘의 역사, 제품, 그리고 문화를 공유하고 싶다고 언급함.

❍ 한편, 중동·북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지역 국가에서는 바레인, 쿠웨이트, 모로코(이상, 1995년 1월, 터키, 튀니지(1995년 3월, 이스라엘(1995년 4월, 모리타니(1995년 5월), 이집트(1995년 6월), 카타르(1996년 1월), 아랍 에미리트 연합(United Arab Emirates)(1996년 4월), 요르단(2000년 4월), 오만(2000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2005년 12월) 등 13개국이 가입을 완료함.

- WTO 가입 작업 중이거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옵저버(observer) 국가는 금번 가입이 승인된 예멘 이외에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이란,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8개국이 있음(2014년 1월 6일 기준).

경제 진흥 기대, 정치·치안의 안정 필수조건

❍ 예멘에서는 2011년의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정부 측과 반정부측의 충돌이 격화되어 같은 해 GDP성장률은 -12.7%(IMF)로 크게 주춤함. 그 후 분쟁으로 타격을 받은 원유생산의 회복과 비석유부문의 안정적 성장으로 2012년에는 성장률 2.4%, 2013년은 6.0%로 경제가 회복 경향에 있음.

- IMF는 2014년 예멘 경제에 대하여 석유부문이 1.8% 감소하고, 비석유부문이 4.0% 증가, 전체적으로 3.4% 성장이 예상된다고 함.

❍ 예멘은 산유·산가스국이지만 모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산유량은 쇠퇴경향에 있음(2013년은 하루 기준량이 22만 6천 배럴, IMF).

- 한편, 인구는 2,588만 명으로 걸프만지역의 대국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규모로 인구증가율도 연 3%로 높기 때문에 예멘의 1인당 GDP는 1,367달러(2012년, IMF)로 MENA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
- 저개발과 실업, 빈곤을 겪고 있어, 고용 창출과 경제개발은 중대 과제이며, 전(前) 산업무역장관은 현지 언론에서 WTO 가입이 이러한 문제 해결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치·치안정세 안정임.

- 예멘에서는 2011년 국내 충돌이 격화된 후, 주변 6개국에서 구성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의 중개안에 근거하여, 오랜 세월 권력을 잡고 있던 살레(Seleh) 대통령이 같은 해 11월 퇴진에 합의함.

- 2012년 2월 대통령 선거로 선출된 하디 대통령(임기 2년)하에서 2013년 3월부터는 국내 각 세력이 참가하여 국민대화가 실시되고 있음.
- 향후 신헌법의 제정과 2014년 2월 예정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실시 등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정치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목되고 있음.

❍ 또한 국내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슬람 과격파 조직 '아라비아반도의 알카에다(Al-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등에 대한 대책도 급선무임.

- 하디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문제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고위관계자를 노린 테러는 계속되고 있음. 2013년 12월에는 수도 사나의 국방성에 무장 괴한이 습격하여 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바 있고, 외국인 유괴도 잇따르고 있어, 치안정세는 계속하여 크게 우려되고 있음.

❍ 주요국들은 예멘 전국에 대하여 대피 권고를 하고 있고, 치안정세가 좋지 않아 현지로의 해외 출국 자체가 곤란한 상황임. WTO 가입으로 예멘의 비즈니스 환경 정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함께 정치·치안정세도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자료: JETRO(2014.01.20)

FAO, 중국 동부 및 남부 H7N9 인간 감염 확인

FAO, 인플루엔자 A형(H7N9) 인간 감염 확인

❍ FAO는 중국에서 인플루엔자 A형(H7N9)의 인간 감염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 곧 시작되는 음력 정월 축제 등에서 더욱 전파될 가능성 및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함.

❍ 수백만의 사람들과 가축의 이동이 우려되는 중국의 신년, 중국의 가정에서는 신년의 축복을 위하여 많은 가정에서 가축의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음.

- FAO는 인플루엔자 A형(H7N9)이나 고병원성 조류독감(H5N1) 등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발생과 함께 중국 및 이웃국가 등에 경계할 것을 발령함.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중국 동부 및 동남부에서, 12월 후반 이후 H7N9의 인간 감염자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겨울에 활발해지기 때문에 증례의 증가는 예상되고 있었음. 기타 국가에서는 인플루엔자 A형(H7N9)의 인간이나 동물, 시장으로의 전염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음.

❍ 지금까지 사람이 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새에 접촉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새를 도살하는 행위 등으로 감염되는 것이 유력하다고 여겨짐. WHO에 의하면,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함. FAO의 레퍼런스 센터가 실시한 유전자해석에 의하면, 바이러스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그 원형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함.

❍ FAO 수석수의관은 인플루엔자 A형(H7N9)바이러스의 인간 감염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중대 조치로서 살아있는 새의 시장판매가 일시적으로 폐쇄, 시장의 위생개선 및 잔존일수 재검토, 가축 및 살아있는 새의 시장판매의 계속적 감시 강화와 가축의 이동 관리가 포함되지만, 바이러스는 임상적인 징후를 보이지 않은 채 가축에 의해 계속하여 널리 확대되므로, 이웃 국가들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함. 주로 향후 수개월 사이, 특히 중국의 음력

정월 사이에 여전히 사람으로의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함.

❍ FAO는 주로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가맹국에 있어서, 위험 관리, 긴급대응 계획, 진단 능력의 확대 및 위험 기준 감시를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A형(H7N9) 바이러스의 가축군으로의 전파 대책 및 예방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작년 6월 이후, FAO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로부터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남부 및 동남아시아의 각국에서 살아있는 새의 시장판매와 농장에서의 동물 환경 감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FAO의 지원으로 아프리카의 몇 개 국가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A형(H7N9)을 포함한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위협에 대한 사전준비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농장이나 시장에 적정한 차단방역(Biosecurity)[10] 기준을 정하는 것, 정기적으로 시장을 세정·소독하는 것, 그리고 감염지역과 직접·간접적으로 가축무역을 하는 지역을 중점 감시를 실시하는 것에 주력 하는 것이 필요함.

- 특정한 영역에 한정하여 동물에서의 감염이 관찰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생산자나 시장판매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한 후, 인도적인 방법으로 새의 처분을 고려해야 함.

❍ FAO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향후 이하의 표준적 예방책을 권고함.

- 감염 동물과의 밀접한 접촉은 사람을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것임. 인플루엔자 A형(H7N9)은 조류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완전한 징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구역과 동물 공간을 구분할 것.
- 가축, 양식조류, 야생조류나 기타 동물과 접촉한 후, 발열 증세가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 손을 씻는 것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이 제거됨. 조류 등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식사의 준비 전후 및 먹기 전에 손을 씻을 것.
- 조리 후 먹을 것과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육류와 따로 보관하여 오염을 피하고, 육류와 기타 음식을 준비할 때 각각의 도구(예를 들면 별도의 도마나

10) 정해진 구역 안에서 모든 생물체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방역. 사람에게나 가축에게 일단 전염병이 걸리면 신체적인 손실과 함께 경제적인 손실도 초래한다. 특히 가축인 경우 제대로 방역하지 않으면 전체 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차단방역임.

조리대의 표면, 칼, 접시)를 사용하고, 육류와 접촉한 모든 조리 기구를 세정하여 소독하는 등 현명한 위생습관을 준수할 것.

- 충분히 조리된 육가공품(모두 70도 이상으로 조리)을 먹을 것. 충분히 조리된 식품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염되지 않으나 생육 및 피가 맺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요리는 위험성이 높음.
- 벽이나 펜스, 망 등을 이용하여 종이 다른 조류와 기타 가축류를 격리하여 전파 가능성을 막을 것.
- 야생조류는 인플루엔자 A형(H7N9) 전파와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야생조류를 가축이나 가축류에 접촉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
- 동물이 병이 들거나 죽었을 경우 그 고장의 수의(또는 공중위생)당국에 그 상황을 보고할 것.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동체 지도자에게 전달할 것. 현재 인플루엔자 A형(H7N9)이 가축의 병을 발병시킨 적은 없지만, H5N1은 병인(病因)이 되기 때문에 가축이나 양식조류, 야생조류, 기타 동물의 병이나 돌연사 등에 의한 죽음은 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유해한 병을 막고, 사람으로의 전염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 죽은 동물을 섭취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또한 죽은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주지 말 것.

※ 자료: FAO(2014.01.20)

FAO, 2014년은 세계 가족농의 해

UN, 가족농업의 중요성 강조

❍ UN은 기아 근절과 천연자원의 보전에 있어서 가족농업이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2014년을 세계 가족농의 해로 정하였음.

❍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주로 가족농가로 정의되고 있는 5억 가구 이상의 가족농가에서 수십억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음.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농가가 농업 전체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의 해'의 식전에서는 올해 1년간 특별대사로서 임명된 UN 관계자, UN 대사, 정부의 각료나 시민사회의 지도자가 출석하였음.

FAO 사무총장, 가족농 생산성의 발전 가능성 강조

❍ FAO 사무총장은 2014년을 '세계 가족농의 해'라고 정하고, Post 2015 개발 아젠다와 제로헝거챌린지(Zero Hunger Challenge)에 관하여 논의함.

- 또한 새천년 개발 목표에 따른 식량안전보장 개선과 천연자원 보전이라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중의 긴급 사안 대응하는 동시에 가족농가가 중심이 되는 존재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언급함.

❍ 가족농업 이외에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의 패러다임(paradigm)에 가까운 존재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가족농가란, 특화되지 않는 다양한 농업활동에 의해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면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 세계 가족농가의 해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족농가뿐만 아니라, 어민이나 목축업 종사자, 원주민 등 전통적인 공동체로 세계에서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강조함.

❍ 더불어 국가와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가족농업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가족농업의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함.

- 지원의 세부사항으로는 가족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과 방침을 제공하는 것, 적절한 기술로 농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농민들이 토지나 물, 금융 및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 더불어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구축 등이 포함된다고 재차 강조함.

❍ 가족농가 단체나 네트워크, 국제 및 지역기관, 민간부문, 시민사회, 학계 등 누구라도 가족농업의 가능성을 다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함.

❍ '세계 가족농의 해' 특별대사로는 말리의 농민단체 국내조정 대표인 Ibrahim Coulibaly, 니카라과의 원주민문제에 관한 UN 상설 포럼의 전(前) 의장인 Mirna Cunningham, 유럽 농민협회장인 독일의 Gerd Sonnleitner가 선임됨.

❑ 세계 가족농의 해 개요

❍ 식량불안정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인구의 70% 이상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중동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그들 가운데 특히 소규모농가는 천연자원,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이 불충분한 가족농가임.
- 가난한 가족농가는 적절한 정책 환경이 효과적으로 갖추어 진다면, 즉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음.

❍ 가족농가는 영토의 네트워크나 지역문화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그들은 주로 지역이나 지방시장에서 수입을 다 소비하기 때문에 많은 농업·비농업의 고용이 발생하고 있음.

❍ 세계 가족농의 해는 가족농업이 기아나 빈곤의 완화, 식량안전보장과 영양의 제공, 사람들의 생활 개선, 자연자원의 관리, 환경보호, 그리고 주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 등 중요한 역할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세계 가족농의 해'는 소규모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인식과 이해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국가·지역·세계 수준에서의 폭넓은 논의와 협력을 추진하고, 가족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자료: FAO(2013.11.22)

독일,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광우병 발견

❑ 독일, 광우병 소 발견

❍ 공식적으로 소해면상뇌병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11]으로 불리우는 광우병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12]으로 알려진 인간 광우병을 유발함. 드물지만 치명적인 이 신경 질환은 질병에 걸린 소로부터 공급되는 쇠고기의 소비와 관련성이 있음.

❍ 세계동물보건기구(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는 독일에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함.

- 이번에 발견된 소는 생후 10년생으로 어떠한 임상증상(clinical signs)도 보이지 않았으나, 도살 후 1월 9일 테스트를 통해 소해면상뇌병증이 확인됐음.
- 도축된 소는 사료섭취와는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는 매우 드문 비정형 형태의 L형(L-type)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짐.

❍ OIE에 따르면, 이 소는 시중으로 유통되지 않았기에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은 전혀 없다고 알려짐.

❍ 독일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팀은 감염된 소가 낳은 7마리를 파악했음.

- 7마리 중 5마리는 이미 도살되었고, 원산지 농장에 남아있던 2마리도 결국 도살됨.

❍ OIE 발표에 따르면 1996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영국에서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175명으로 확인됐음. 또한 미국을 포함한 11개국에서 인간 광우병에 걸린 환자는 50명에 달함.

※ 자료: Bloomberg(2014.01.19)

11) 소에게서 생기는 치명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임. 이 질병은 소의 뇌와 척수가 스펀지(sponge, 해면) 모양으로 변질되며 눈이 붉어지는 증상이 있음. 구제역이나 우역(牛疫, rinderpest)과 같은 가축 질병 정도의 대량 발병 사태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인간에게 감염될 우려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질병임.

12)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은 매우 희귀한 퇴행성 신경성 질환으로, 치료법은 없으며 일단 발병하면 반드시 사망하는 치명적 질환임. 이의 변형이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ariant CJD, vCJD)임.

UNEP, 세계 토지 이용 평가

※ 전 세계 대륙 면적은 약 149억ha로 그 중 거주지 및 인프라(infrastructure)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함. 2005년 기준으로 거주지 및 인프라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측정 방법에 따라 1~3%로 나타났음. 정부의 개입과는 별도로 2050년경에 거주지 및 인프라가 차지하는 면적은 2억6천만ha~4억2천만ha까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됨.

농경지 및 농업지역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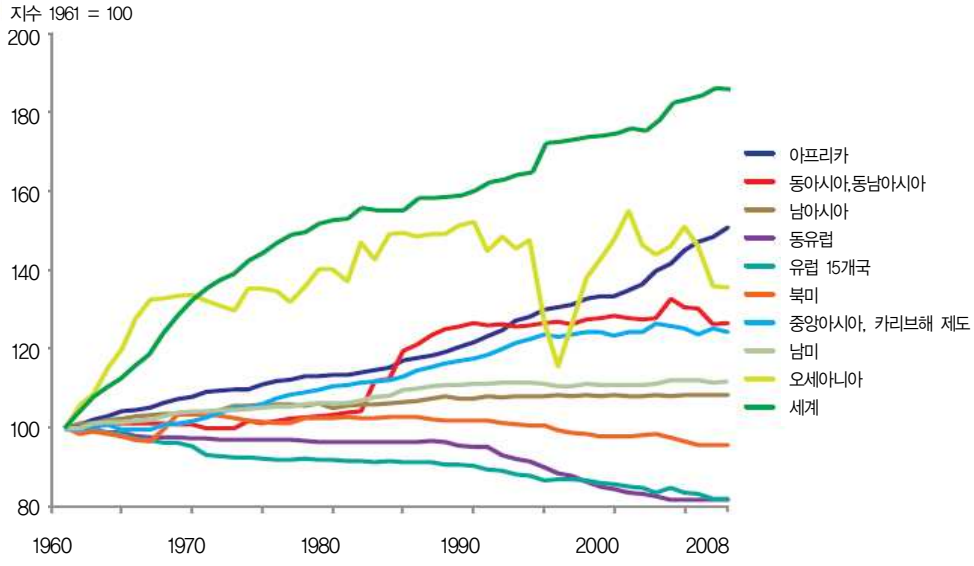
❍ 오늘날 세계 농경지(cropland) 면적은 15억ha 정도로 세계 전체 토지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농업지역(agricultural area)[13]의 면적은 약 46억ha로서 전체 면적의 33% 가량을 차지함. 1961~2007년 동안 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 이용 면적은 약 11%(15억ha) 증가했음.

❍ 토지 이용 면적의 변화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음. EU 15개국,[14] 동유럽,[15] 북미[16]의 농경지 면적은 최근 감소한 반면, 남미,[17] 아프리카,[18] 아시아[19]의 농경지 면적은 증가했음<그림 1 참조>.

❍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경작집약도(cropping intensity)[20]는 복합재배지수(Multiple Cropping Index, MCI)[21]에 의해 나타낼 수 있음.
- 경작집약도는 더 많은 복합작물재배와 더 짧은 휴경 기간 등으로 인해 과거에 꾸준히 증가했음.

13)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따라 농경, 원예, 축산 등 농업에 이용되는 지역을 뜻함.
14) EU 15개국: 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15) 동유럽: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16) 북미: 주로 미국 등.
17)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18)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수단 등.
19) 아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
20) 경작면적 중 관개를 하여 작물이 생육되는 면적이 차지하는 백분율로서, 「경작집약도 = (총재배면적 / 순재배면적)*100」으로 나타낼 수 있음. 경작집약도는 동일한 영토에서 윤작을 할 경우 100을 초과할 수 있음.
21) 연간 수확되는 각각의 작물 경작면적의 합을 총 경작면적으로 나누어 준 것임.

그림 1 1961~2008년 농작물 및 영구작물 재배면적 변화율(%)



자료: UNEP. 2013. *Assessing Global Land Use: Balancing Consumption with Sustainable Supply.* UNEP.

- 총 농경지 중 관개면적 비율의 증가는 더 많은 복합작물재배에 기인함.

❍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경작집약도는 1961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음.
- 동 기간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로 각각 25%p, 16%p 증가했음. 반면 유럽의 경작집약도는 8%p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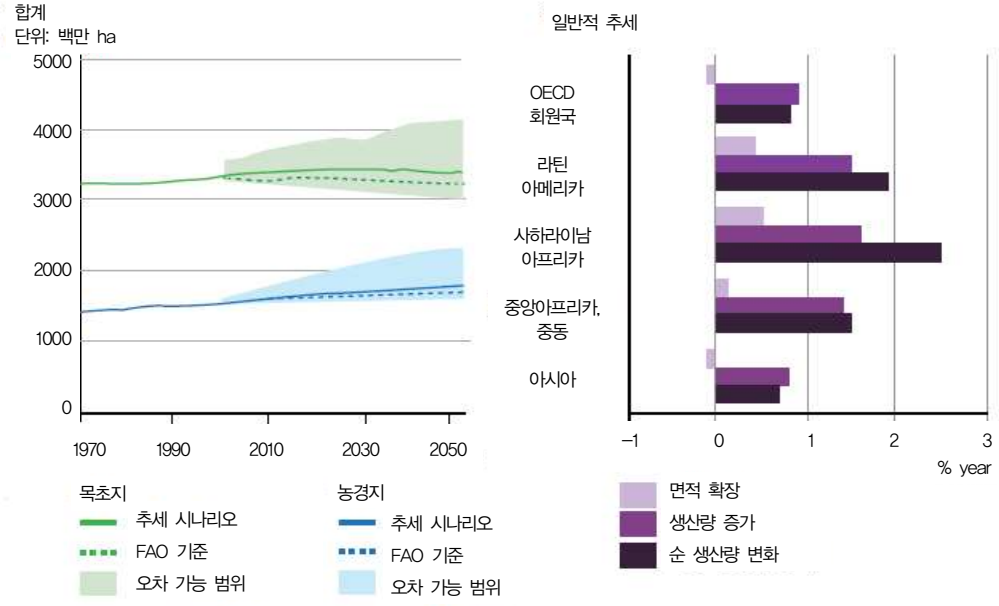
❍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용도별 토지면적의 변화 현상은 국제 무역의 증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유럽의 농경지 감소는 유럽의 사료 생산을 라틴 아메리카의 대두 및 콩가루 수입으로 크게 대체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OECD에 따르면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세계의 농지(agricultural land) 면적(농경지 및 영구목초지 포함)이 2030년까지 대략 10%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14%까지 증가하여 그 면적은 6억9천만ha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22)]

22) Measuring material flows and resource productivity – Volume I. The OECD/IEA (2008)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Scenarios and strategies to 2050. Paris.

❍ 네덜란드환경평가청(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NEAA)에서 개발한 세계 토지이용 시나리오에 따르면, 농경지 면적은 현재 15억ha에서 2050년경에는 16억ha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농경지는 주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확장될 것으로 판단됨. 한편 동 기간 온대지방(temperate zone)의 농업지역 면적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1961~2008년 농작물 및 영구작물 재배면적 변화율(%)



자료: UNEP. 2013. *Assessing Global Land Use: Balancing Consumption with Sustainable Supply.* UNEP.

※ 자료: UNEP(2014.01.30.)

자료 작성: 이혜은 연구원, 윤성은 연구원, 서강철 연구원